

[별지 제4호서식의(가)]

(○ ○ 방 송 사)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

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서 「국민투표법」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텔 레 비 전 방 송 시 설				라 디 오 방 송 시 설			
시설명	일 자	시 간 (부터~까지)	비고	시설명	일 자	시 간 (부터~까지)	비고

(○○방송사의 장) 인

[별지 제4호서식의(나)]

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서

방송시설 구분	횟수	방송 시설명	이용일시 (부터~ 까지)	소요 시간	연설원 인적사항			비고
				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
텔레비전	1							
	2							
	3							
라디오	1							
	2							
	3							

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서 「국민투표법」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[○ ○ 당 인]
 [대 표 자 ○ ○ ○ 인]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: 1. "이용일시"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"비고"란에는 "녹화방송" 또는 "생방송"이라 기재합니다.